###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유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20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1.

발 의 자: 강유정・김준혁・박홍배

김한규 · 박희승 · 김영배

정을호 · 서영교 · 박민규

임오경 · 서미화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고,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외교부장관, 통일부장관, 국방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외로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해당 규정으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금지되면서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구글지도, 애플지도가 우리나라에서만 정밀한 지도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으며, 구글지도와 애플지도를 기반으로 작동되는 다른 모바일앱들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관광객들에게는 큰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처럼 우리나라가 지도데이터의 국외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 은 국외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가 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포함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었는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국외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16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##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16조제2항 단서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"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제16조(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      | 제16조(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 |
| 출 금지) ① (생 략)          | 출 금지) ① (현행과 같음)  |
|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      | 2                 |
|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술정보통신부장관, 외교부장관,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통일부장관, 국방부장관, 행정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안전부장관, <u>산업통상자원부장</u> | 문화체육관광부           |
| 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       | 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 |
|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③ ~ ⑤ (생 략)            |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   |